

#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4)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정리 대외홍보팀

##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지 (제9차~13차)

제9차 개정<법률 제5886호, 1999. 2. 8.>

[일부 개정]

### 개정이유

사업장의 산업안전관리체제를 노사의 자율적인 관리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요인들의 인과관계 또는 질병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한 역학조사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며, 기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

결하기 위하여 노사동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 사업주는 동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노사 간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② 종전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는 외에도 별도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성능검정 외의 중복적인 규제사항을 폐지함.
- ③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유자격 검사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행하도록 하고 당해 검사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를 폐지함.
- ④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질병과 유해요인들의 인과관계 또는 질병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⑤ 건강장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직 시에만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도록 하여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유해작업에 종사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해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의 건강이 쉽게 점검될 수 있도록 함.
  - ⑥ 근로감독관의 점검·출석요구 등 감독상의 조치에 위반한 경우의 벌금을 1천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조정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칙과 균형이 맞도록 함.

제10차 개정<법률 제6104호, 2000. 1. 7.>

[일부 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당해 설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안전보고서 정기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산업안전지도사 등에 대한 정기직무교육제도를 폐지함.

제11차 개정<법률 제6315호, 2000. 12. 29.>

품질경영촉진법의 법제명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000. 12. 29, 법률 제6315호]

#### [본문 생략]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 산업안전보건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중 “품질경영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로 한다.

③ 및 ④생략

#### 제12차 개정<법률 제6590호, 2001. 12. 31.>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과 산업재해예방기금이 통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으로 개정되고 산업재해예방기금의 기금운영계획은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예방기금의 기금운영계획으로 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장 산업재해예방기금 규정(제53조 내지 제60조)을 삭제, 제61조의3(재해예방의 재원) 규정 신설.

### 기금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

[2001. 12. 31, 법률 제6590호]

#### [본문 생략]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 산업안전보건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53조 내지 제60조)을 삭제한다.

제6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1조의3 (재해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재해예방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 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⑧내지 ⑩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3차 개정 <법률 제6847호, 2002. 12. 30.>

[일부 개정]

**개정이유**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동안 행정형벌 부과대상이었던 안전관리자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의2 신설).
- ②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주가 재해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함(법 제10조의2 신설).
- ③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24조제1항제5호 신설).

- ④ 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장치 및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일정 기간마다 재 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함(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
- ⑤ 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도록 함(법 제40조제5항 신설).
- ⑥ 그동안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작업환경측정 실시 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

